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102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4.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7.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0.
11. 25. 접수 제18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채권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주식회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20차전138042), C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소송절차에 회부되었으며(2020가소1593850), 위 법원은 2020. 9. 18. ‘C은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0,604원 및 그 중 2,746,627원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0. 21.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아버지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7. 1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H, I, C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접수 제180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은 C의 적극재산의 전부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고), C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전한 이상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설령 그것이 망인 사망 이후 피고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라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또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별지